

#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(임종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31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6. 18.

발 의 자 : 임종득 · 서천호 · 김예지  
성일종 · 김승수 · 김상훈  
윤상현 · 나경원 · 이종배  
김성원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이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는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고,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음.

그런데 최근 농촌지역의 고령화 등에 따라 상속농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농과 후계농업인은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농지의 비효율성이 심화되어 농업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음.

이에 상속자가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대하여는 한국농어촌공사 외에 후계농업인이나 청년농업인에게도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지의 효율적

인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23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##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제1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한국농어촌공사나”를 “한국농어촌공사, 「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후계농업인·청년농업인이나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3조(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다.</p> <p>1. ~ 6. (생략)</p> <p>7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<u>한국농어촌공사</u>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가.·나. (생략)</p> <p>8.·9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23조(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----- -----<u>한국농어촌공사</u>, 「<u>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법률</u>」 제2조에 따른 <u>후계농업인·청년농업인이나</u>----- ----- -----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가.·나. (현행과 같음)</p> <p>8.·9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